

기계적 사고

1. 사고개요

1987년 2월11일 보험계약자 B와 보험자 C 사이에 부산시 영도구 D공장내에 소재하는 OM-VT012 선반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보험금액은 1억3천5백만원, 보험기간은 1987년 2월11일부터 1988년 2월11일까지 1년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산종합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1987년 6월5일 D공장내에서 선반공이 위 선반으로 베아링가공 작업을 하던 중 베아링의 외경가공이 완료된 후 부대작업인 홈가공작업을 하다가 위 선반의 턴테이블에 장착된 조(Jaw) 뭉치가 탈락되면서 조뭉치가 턴테이블과 폴리축 사이에 끼어 폴리축 및 베벨기아 등 동 선반의 부품들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보험자 C는 본건 사고가 동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기계적 사고에 해당된다 하여 면책처리하자 분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순 관
(한국보험공사 조정과 대리)

2. 당사자주장

보험계약자 B는 동 선반에 의한 베아링 가공작업이 그간 연속적으로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본 건 사고는 선반공이 조(Jaw) 뭉치의 조정나사 점검을 미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이는 기계적 사고가 아님이 명백하며, 또한 점검 미이행이 보험계약상의 면책손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도 볼 수 없으므로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보험자 C는 보험의 목적물인 선반의

턴테이블에 장착된 조뭉치의 조정나사가 진동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풀린 상태에서 선반이 가동되므로써 턴테이블의 회전에 따른 원심력에 기인하여 조뭉치가 턴테이블에서 탈락되면서 턴테이블과 폴리축 사이에 끼여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해당기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기계적 사고가 명백하고 아울러 이 사고가 해당기계 아닌 외래의 다른 기계로부터 우연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판정내용

본 건 동산종합보험분쟁을 심의한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는 본 건 사고가 기계적 사고에 해당하는 면책사고로서 보험자 C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

항 2호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기계적(전기적) 사고가 우연히 외래의 사고결과로 생겼을 경우의 손해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계적 사고란 통상 기계의 사용방법대로 사용하는 상태에 있어서 기계의 내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목적의 손상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결과로 생긴 손해가 아닌 기계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동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에, 당사자가 제출한 보험사고 심사요청서, 사고보고서, 이재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 건 사고는 보험목적의 턴테이블에 장착된 조(가공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조정나사를 이용하여 해체·조립토록 되어 있음)의 조정나사가 계속적인 진동 등으로 풀린 상태에서 보험자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경위로 조가 탈락되면서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명백히 기계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짓고 보험자 C는 앞에서 본 면책약관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4. 후설

기계적 사고란 추상적으로는 기계의 내적원인에 의한 기계고장사고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는 설계·재료·조립의 하자, 볼트의 느슨함(나사가 풀어지는 것), 윤활유의 부족, 계속적인 과부하운전 등을 의미하며,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는 기계적 사고담보특약을 첨부하지 않는 한 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 되는 것이다.

기계적 사고를 동 보험에서 면책으로 하는 이유는 우선 기계적 사고의 경우, 보험목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목적의 하자는 절대적 면책사유로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 사유를 근거로 하여 충분히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문제로서는 보험자측에서 보험목적의 하자나 그 원인을 거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계적 사고라는 사고발생 형태를 취하여 면책으로 한 것이며, 다음으로 관리불충분이나 과도운전 등으로도 기계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도 절대적 면책사항인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보사항인 단순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인가를 보험자가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 또는 단순과실이냐를 불문하고 기계적 사고는 면책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다만 보험목적물의 조작·취급상의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형태에 따라서 기계적 사고로서 면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부책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시

간에 걸쳐 모터를 회전시키거나 또는 라이트를 장시간에 걸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사고로서 면책이 되고, 이에 반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회전하여야 하는데, 좌측으로 회전하므로써 또는 피스톤을 역회전시킴으로써 기계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부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상 보험목적물의 사용방법상태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는 면책이 되고, 통상의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예측되지 않은 위험은 외래의 사고로서 부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반의 턴테이블에 장착된 조몽치의 조정나사가 진동 등의 영향으로 풀린 상태이었음에도 동 조정나사를 선반공이 점검치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외래적인 요인의 개입없이 턴테이블의 회전에 따른 원심력에 기인되어 조몽치가 탈락되면서 그 기계자체내의 턴테이블과 폴리축 사이에 끼여 발생한 사고이고, 아울러 턴테이블로부터 떨어져 나간 조몽치가 보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별개의 기계에 떨어져서 그 기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동 보험의 목적인 선반을 통상의 사용방법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자체내의 원인으로 기계자체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를 기계적 사고로 보아 보험자 C는 이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㉞)